



삼척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48호 2020. 12. 4.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훈 령

- 삼척시 훈령 제305호 삼척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2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98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고시 ----- 8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1074호 삼척시 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훈령 제305호

삼척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12월 1일

삼척시장

삼척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제1조 중 “처분 요구”를 “처분요구”로, “「삼척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대상 기관”을 “「삼척시 자체감사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감사 대상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반에 걸쳐”를 “전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립이 나”를 “수립 또는”으로, “제반 정상”을 “모든 여건”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행정감사규정」 및 「강원도 행정감사규칙」 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으로,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를 “맞지 않는 규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삼척시 자체감사 규칙」에서 정한 징계,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강원도 감사기구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표명을 수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1항 중 “면책심의회”를 “삼척시면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능은 「삼척시 자체감사규칙」 제29조”를 “기능은 「삼척시 자체감사규칙」 제13조”로 한다.

제8조 중 “피 감사기관장”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피 감사자”를 “감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피 감사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따라서 당해”를 “따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 감사대상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의견을 첨

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처분대상은 「삼척시 자체 감사규칙」 제3조”를 “처분대상은 「삼척시 자체감사 규칙」 제2조”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기록유지) 감사부서의 장은 경고 등 처분사항을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면책심사신청 안내

삼척시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 본인
 -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 이전(다만,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기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면책심사 신청서

적극행정 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타		

※ 필요 시 관련 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삼척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면책심사조서

감 사 기 관 명		감사 연월일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징 계 양 정 (안)			
비 위 내 용			
신 청 사 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감 사 부 서 책임자 검토 의견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종 합 의 견		

삼척시 고시 제2020 - 198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 12. 4.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614-1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2. 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16-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614-1	20201204	건물신축	20090807	자연지형 명칭반영(산맥)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500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610-10	20201204	건물신축	20090626	역사인물 이승휴의호(동안) 활용
3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18-1	강원도 삼척시 박결남로 1084 (적노동)	20201204	가설건축물	20090626	역사인물(박결남) 이름활용 (문화재명칭)
4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산233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갈전길 1011	20201204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5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24-3, 24-23, 35-2, 35-3, 174-10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안길 49	20201204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 및 지역위치
6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안길 41		20201204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 및 지역위치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주소	계	주소	건수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갈진리 16-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614-1	6건	20201204	건물신축	20090607	자연지형명칭 반영(신택)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500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610-10		20201204	건물신축	20090626	역시인물 이승휴의호(동안)활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18-1		강원도 삼척시 바결남로 1084 (적노동)		20201204	가설건축물	20090626	역시인물(박결남)이름활용(문취재명칭)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갈진리 신233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갈진길 1011		20201204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부여 5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24-3, 24-23, 35-2, 35-3, 174-10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안길 49		20201204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및지역위치	도계북할곡역연구관
폐지 6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안길 41				20201204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및지역위치	

삼척시 공고 제2020 - 1074호

「삼척시 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삼척시장

삼척시 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도계 작은영화관 건립이 준공됨에 따라 「삼척시 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영화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삼척시 영화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가람영화관 및 도계 작은영화관으로 구분

나. 영화관 시설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3. 입법예고기간 : 2020. 11. 27. ~ 12. 17.(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자원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자원개발과
 - 전화 : 033-570-4051
 - FAX : 033-570-3187

5. 참고사항

이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시정소식- 뉴스/미디어-입법/공고/고시”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삼척시 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가람영화관 : 강원도 삼척시 엑스포로 50
- 2. 도계 작은영화관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23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화관”을 “가람영화관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도계 작은영화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상영관 1개관
 - 2. 대기실
 - 3. 매표소 및 휴게실
 - 4. 그 밖의 부대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위치) “삼척시 <u>영화관</u>”(이하 “<u>영화관</u>”이라 한다)은 삼척시 엑스포로 50에 둔다</p> <p>제3조(시설) <u>영화관</u>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신설></p>	<p>제2조(명칭 및 위치) 삼척시 <u>영화관</u>(이하 “<u>영화관</u>”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가람영화관</u> : 강원도 삼척시 엑스포로 50</p> <p>2. <u>도계 작은영화관</u>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23</p> <p>제3조(시설) ① <u>가람영화관의</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u>도계 작은영화관의</u>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상영관 1개관</u></p> <p>2. <u>대기실</u></p> <p>3. <u>매표소 및 휴게실</u></p> <p>4. <u>그 밖의 부대시설</u></p>

[붙임 2]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명 :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